

第102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6號(附錄)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次

- 1. 서울特別市鐘路區飲食物쓰레기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面
- 2.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8面
- 3. 홍제·불광천流域環境行政協議會規約(案) 審査報告書 11面
- 4. 崇仁 第4住宅再開發 區域指定및 事業計劃 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15面
- 5. 杏村地區內 都市計劃用途地域·地區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17面
- 6. 1999會計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 審査報告書 19面
- 7.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運營委員會所管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 23面
- 8.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所管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 27面
- 9. 2000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所管 行政事務監查 結果報告의 件 42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審査報告書

2000. 7. 7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4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26일
- 다. 상정일자 : 제10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2000. 7. 3)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가. 개정사유

'99. 8. 9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개정조례 준칙('99.11.24)에 근거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안 제6조)

나. 감량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 규정 (안 제6조)

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 설치규정 삭제 (안 제10조)

라. 수거·운반·보관기준 설정 (안 제12조)

다. 개정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99. 8. 9)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개정조례 준칙 ('99.11.24)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99.8.9)에 따라 개정조례준칙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감량화 자원화 등에 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

나. 주요 골자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 기준을 강화(안 제 6조제3호)

- 가열에 의한 건조시 :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종전 75%미만에서 25%미만으로 함

- 발효 또는 발효건조시(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함

※ 근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라목('99.8.9 개정)

○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 설치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

-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 삭제

○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용기 기준 설정(안 제12조제3항)

-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함

※ 근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3호 나목('99.8.9 개정)

○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신설(별표1)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 신설(안 제14조)
 -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 점검토록 함

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적용대상

-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접객업 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 및 객석면적이 100㎡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우리 구 의무대상

(배출량 : 톤)

총 계		집단급식소		음식업소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	
업소수	배출량	업소수	배출량	업소수	배출량	업소수	배출량	업소수	배출량
653	20	68	5	576	13	1	1	8	1

라. 검토의견

-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마.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2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2(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③ 영 제6조제3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3.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기준 및 방법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업소별 객석(객실을 말한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주로 하는 자

(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라)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마)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2)(1)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박 종 식 위원, 이 동 규 위원, 안 재 흥 위원, 정 태 순 위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청소행정과장 정 윤 한)

문) 일반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봉투의 가격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고 금액이 똑같은 이유는 무엇인
가?

답) 봉투가격의 차이가 있게 되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가격이 싼 봉투에 모두 섞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분리수거가 되질 않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위해 가격을 똑같이 책정한
것입니다.

문) '99년 9,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아파트, 학교 등에 13개의 쓰레기 감량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아는
데, 근거조항인 동 조례 제10조제2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시 예산 50%를 지원받아 설치하였으나, 현재 서울시 전 구에서 음식물에 섞인 염분으로 인한 기계
이상, 악취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대로 된 감량기기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주민불편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
된 것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안재흥 위원 수정안 동의

- 제10조제2항의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기 위한”으로 수정

6. 審 查 結 果 :

○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안)은 원안가결 : 수정(안) 별첨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서울특별시중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년월일 : 2000. 7. 3

발 의 자 : 시민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하기 위한 감량기기 설치조항인 조례 제10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적정 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감량화가 정제될 우려가 있고, 또한 동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전문 개정하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2. 수정골자

- 제10조제2항 중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기 위한”으로 수정

2.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0. 7. 7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21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26일
- 다. 상정일자 : 제10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2000. 7. 3)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가. 개정사유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및 2000년 하반기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에 대비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가격 등을 세분화하여 구민 편의에 도움을 주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품의 범위 및 배출요령 추가 (별표1 - 제10조 3항 관련)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용량별 규격의 가격 세분화 (별표2 - 제18조 관련)
 - 5, 10, 20, 30 l → 2, 3, 5, 10, 20, 30 l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용량별 규격 및 용도 (별표3 - 제20조 관련)
 - 2, 3 l (규격 및 용도) 신설

다. 개정근거

- 2005. 1. 1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3호 가목)
- 2000년 하반기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 (운영조합 '97. 2. 3)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음식물쓰레기가 금년 하반기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 금지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5년부터는 바로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가격 등을 세분화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촉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임

나. 주요골자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범위 및 배출요령에 의류·신발·가방류·장판류를 추가하고 음식물류는 삭제하여 「중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규정토록 함(별표1, 제6호)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 및 규격을 세분화(별표2, 별표3)
 - 음식물쓰레기 전용 : 5, 10, 20, 30 → 2, 3, 5, 10, 20, 30 ℓ
 - 사업장음식물쓰레기 전용 : 신설(5, 10, 20, 30 ℓ)

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배 출 량			처 리			미 처 리		
계	가정	업소	계	공동주택	감량의무사업장	계	일반주택	일반음식점
100톤	31톤	69톤	25톤	5톤	20톤	75톤	26톤	49톤

라. 참고사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99.8.9 개정)

3.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 개량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마. 검토의견

- 조리문화권인 우리의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많아 배출단계에서 수집·운반 매립시 오수 및 악취 발생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임
- 특히 가정에서 분리 배출시 규격봉투의 용량이 너무 크면 배출시까지 장기간 보관하게 되어 부패로 인한 악취가 심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므로 2ℓ, 3ℓ 등 소형봉투를 제작 공급함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다만 주민이 분리 배출하더라도 수거 및 처리체계가 미흡할 경우 분리배출의 실효성이 저하될 것
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박 종 식 위원, 이 동 규 위원, 안 재 흥 위원, 정 태 순 위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청소행정과장 정 윤 한)

문)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정당하게 처리한 건축 자재 등의 쓰레기가 무단투기 돼서 위탁받는 자가 아닌
당사자에게 그 벌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답) 조사를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 구에서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던 동부지역이 지난 7월 1일부터 대행으로 옮겨가면서 민원이 발생하
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을 함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게 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의 설치를 규제하고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 대행구역이 확대되면서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답) 계약서를 보면,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행업체들이 가입하고 있는 협회가 있어 그 곳에
서 응급 대책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 청소행정에 있어 다른 좋은 제도나 방안은 도입하여 우리에게 맞게 연구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답)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국내는 물론, 국외라도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도입코
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3.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審 查 報 告 書

2000. 7. 7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4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26일
- 다. 상정일자 : 제10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2000. 7. 3)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가. 제정이유

홍제·불광천 유역에 위치한 서울 북서지역의 4개 지방자치단체(종로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홍제·불광천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보전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을 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협의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을 위원으로 한다.(안 제4조)
-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안 제10조)
 -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하상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 홍제·불광천 살리기 지역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 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단, 경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제천과 불광천을 구분하여 해당 하천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안 제15조)

-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16조)
-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안 제18조)

다.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제안 이유

- 홍제·불광천 유역에 위치한 4개 자치구가 수질환경개선 등 지역환경개선사업을 공동 추진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협의회의 구성은 종로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을 위원으로 함(안 제4조)
- 협의회의 기능(안 제10조)
 -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수질 생태계 조사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 홍제·불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가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 하천 관할구역 자치단체가 분담토록 함(안 제15조제2항)
- 협의회에서 합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16조제2항)

다. 행정협의회 구성 절차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안) 작성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약 체결

라. 홍제천 현황 (불광천은 우리 구 관할 아님)

- 발 원 지 : 종로구 구기동
- 총 길 이 : 12.3km (우리 구 관내 약 2.8km)
- 수질현황(BOD) : '98 평균 9.1
 - ┌ 최대 24.2(11월)
 - └ 최소 2.6(6월)

※ 하천수질 등급

등 급	I	II	III	IV	V
이용목적별	상수원수 1급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공업용수 3급
BOD	1 이하	3 이하	6 이하	8 이하	10 이하

- 연안특성
 - ┌ 상류 : 공원 및 녹지지역
 - └ 하류 : 주택밀집지역
- 하천특성 : 상류는 주로 암반층, 하류는 모래, 자갈로 형성된 자연하천

마. 타구 추진현황

- ┌ 마 포 구 : 2000. 4. 1 규약(안) 구의회 의결
- ┌ 서대문구 : 2000. 5. 27 규약(안) 구의회 의결
- ┌ 은 평 구 : 구의회 계류 중

바.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행정협의회 구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협의회의 규약)
 -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6. 기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 검토의견

- 홍제·불광천유역에 위치한 4개 구가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질개선 등 지역 환경보전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날로 악화되고 있는 하천의 수질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안 재 홍 위원, 이 동 규 위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환경위생과장 이 한 용)

문) 생활복지국의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에 수질환경분야는 한 건도 없는 데, 이 규약(안)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답) 이 규약(안)은 4개 구청이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 보전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 구기천 평창동 일부에 분류하수관 시설이 안되어 있어 특히 갈수기에는 오염이 심하니, 토목과와 협의하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분류하수관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답) 토목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4. 승인 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結果報告書

2000. 7. 7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5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26일
- 다. 상정일자 : 제10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 1차(2000. 7. 3)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하철승)

가. 제안이유

지봉길 창신역(지하철 6호선) 인접구역의 구릉지에 위치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민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개선조성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코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지역현황

- 위 치: 승인동 20번지 일대
- 면 적: 23,962.65㎡
- 세대수: 423세대(가옥주: 206, 세입자: 217)
- 용도지구: 일반주거지역

2) 재개발구역의 결정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주택재개발사업	승인제4주택 재개발구역	종로구 승인동 20번지일대	23,962.65	

3.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현 수 한 위원, 선 상 선 위원, 정 병 환 위원)

(답변자: 하 철 승 도시관리국장)

문) 승인제4구역은 언제부터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습니까?

답) '96년도부터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해왔습니다.

4. 意見 採擇 : 없 음

5.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5. 행촌지구내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結果報告書

2000. 7. 7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21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26일
- 다. 상정일자 : 제10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 1차(2000. 7. 3)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하철승)

가. 제안이유

우리 구 관내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내 행촌동 1-31번지 일대는 풍치지구가 해제되지 않아 건폐율 40%이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풍치지구 해제를 병행 추진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계획(안)의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용도지역(1종일반주거지역 지정) 변경결정 조서

위 치	변 경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면적(m ²)	
행촌동 1-31번지일대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	일반주거지역	1종일반 주거지역	4,523.1	풍치지구 해제지역

2) 용도지구(풍치지구해제) 변경결정 조서

풍치지구명	위 치	변 경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추가해제 면적(m ²)	
인왕지구	행촌동 1-31번지일대 (행촌주거환경개선지구)	756,449m ²	751,925.9m ²	4,523.1	

3.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현 수 한 위원, 선 상 선 위원, 정 병 환 위원)

(답변자: 하 철 승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 강 인 호)

문) 행촌동 1-31번지일대의 풍치지구가 해제되면, 달라지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 건폐율이 40%이하에서 70%로, 용적률 400%로 증가되어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문) 풍치지구가 해제되면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일조권, 주차장문제, 도로확보 문제 등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문)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는 일조권, 사선제한, 주차장 확보의 조건들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4. 意 見 採 擇 : 없 음

5.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6. 19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審 査 報 告 書

2000. 7. 7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결산특별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9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7월 3일
- 다. 상정일자 : 제 10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 2차 결산특별위원회(2000. 7. 4) 상정·의결

2. 提案說明 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가. 제안이유

- 1999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결정대비 실제수납비율
일반회계	123,841,706	141,909,001	123,854,002	395,340	17,659,659	87.3%
특별회계	33,904,759	54,581,162	36,294,545	1,203	18,285,413	66.4%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세 출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예산전용				
일반회계	115,693,855	8,147,851	651,425	90,544	123,841,706	104,862,575	5,815,723	13,163,407
특별회계	33,804,759	100,000	0	215,000	33,904,759	12,260,508	44,896	21,599,354

【 소관 국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불용액
합 계	122,554	103,656	933	4,883	13,082
감사담당관	52	48	-	-	4
행정관리국	67,276	59,206	686	320	7,064
재 무 국	1,348	1,150	-	14	184
생활복지국 (보건소포함)	38,788	32,916	-	1,049	4,823
도시관리국	3,108	1,735	247	669	457
건설교통국	11,982	8,601	-	2,831	550

【 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불용액
합 계	33,904	12,260	45	21,599
의료보호기금	4,298	3,974	-	324
주차장 건설	29,606	8,286	45	21,275

【 예비비 지출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합 계	651	628	23
시민행정(위)소관	462	458	4
재무건설(위)소관	189	170	19

【 공유재산증감 및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
일반회계	597,541	605,178	7,637
특별회계	3,822	10,168	6,346

【 기금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기 금	전년도이월액	당해년도수납액	지출액	이월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7	2,854	3216	1925	4,145

【 채권 및 채무 】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가액	당해년도 소멸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채 권	543	579	820	302
채 무	4,000	5,000	.	9,000

【 물품증감 내역 】

연도별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
물품 및 금액	1,250점 61억7,600만원	1,312점 62억3,200만원	62점 5,600만원

3.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오 금 남 위원, 이 형 술 위원, 이 동 규 위원, 김 정 대 위원)

(답변자: 재무국장 동 연 호,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건설교통국장 오 중 석)

문)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총 47억원인데 이중 40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는 바, 부지매입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 현재 4개소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송인동 지역은 준공되었으며 명륜동, 창신동은 7월중에 준공예정이고, 명륜1가는 7월중에 발주하여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문)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답)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대체압류를 하고 있으며, 소액의 경우도 압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 예비비의 공공근로사업 물품구입비 3건에 2억 2,200원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답)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원과 근로사업에 필요한 도구, 페인트 등을 구입한 금액이 2,200만원입니다.

4. 討 論 要 旨 : 없 음

5. 審 査 結 果 : 원안 가결

6.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7.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7. 200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750
----------	-----

제안일 : 2000. 7. 7
 제안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 종로구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감사기간 : 2000. 6. 30(1일간)
- 감사대상기관 : 종로구의회 사무국
- 감사실시경과
 - 감사반의 편성 : 흥기서의원 외 8인
 - 감사장소 : 종로구의회 소회의실
- 주요감사실시내용
 - 예산집행 현황
 - 의안 및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
 - 기타 의정활동 지원사항 등
- 감사실시결과
 - 시정·처리 요구사항 : 3건
 - 건의사항 : 3건

3. 보고서(안) : 별첨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0. 7. 7

수 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제 목 : 2000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의 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발의
합니다.

첨부: 2000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1부. 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2000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案)

1. 監査의 目的

- 종로구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의회활동과 1999년도 결산(안), 다음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게 하여
-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사무국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監査期間 : 2000. 6. 30(1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종로구의회사무국

4. 監査實施經過

- 감사반의 구성
 - 위원장 : 홍기서
 - 간사 : 김복동
 - 감사위원 : 정태순, 이현구, 유찬중, 이형술, 오필근, 김이환, 김정대
- 감사 보조직원
 - 전문위원 : 장소수, 강광일
 - 직원 : 의사담당주사 장경수, 7급 신병천, 김경량
 - 속기사 : 별정8급 서은미, 별정9급 유연숙
- 감사장소 : 종로구의회 소회의실

5. 監査方法

- 현지확인 또는 보고·서류의 제출 및 관계인의 출석증언
-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6. 主要監査實施內容

- '99년도 및 2000. 5월까지 예산집행 현황

7. 監査結果 및 處理意見

가. 主要 是正·處理 要求事項

- 의회내 회의실의 환경은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냉, 난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하게 가동되도록 하기 바람
- 구청에서 발행되는 「종로사랑」이 구정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으니 의정홍보에도 최대한 지면을 할애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의회에서 발행하는 「종로구의회소식」도 전체 의원의 의정활동 기사가 형평성을 이루도록 조화있는 편집이 되도록 할 것
- 의회의 예산은 귀중한 국민의 혈세인 점을 감안하여 평소 근검절약하여 집행함은 물론, 특히 공통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최대한 긴축하여 예산의 낭비적 측면이 없도록 하기 바람

나. 建議事項

- 속기용 컴퓨터는 의정활동의 신속한 기록과 정확한 속기로 의사효율을 증대시킬 것으로 사료되니 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
- 유관기관과의 공통업무추진비는 우리 의회와 관내 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하게 운용하기 바람
- 동 관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나 공사 착공시에 지역구의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소외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구청 주관 행사시 의원 예우가 미흡한 사례가 있으니 의원 예우에 각별히 유념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8. 200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751
----------	-----

제안일 : 2000. 7. 7.
제안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1. 제안이유

-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감사기간 : 2000. 6. 25 ~ 7. 1(7일간)
- 감사대상기관 :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동사무소(19개동), 시설관리공단
- 감사반의 편성 : 이 현 구의원 외 8인
- 감사장소 :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실 및 동사무소 감사장, 시설관리공단 감사장
- 주요감사실시내용
 - 소관별 주요시책 및 예산집행 현황(기간: '99년도 및 2000. 5월까지)
 - 문화행사·문화재 관리사항 및 자체감사 활동 사항
 - 각종 민원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과 동행정지도 관련사항
 - 저소득시민의 보호 및 가정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사항
 - 위생업소의 지도단속 및 상공, 연료, 물가와 환경에 관한 사항
 - 쓰레기종량제 추진실태 및 환경미화원에 관한 제반 사항
 - 방역사업 등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동사무소 주민등록 관리 및 민원처리 사항
 -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 상태 등
- 감사실시경과
 - 시정·처리 요구사항 : 17 건
 - 건의사항 : 32 건

3. 보고서(안) : 별 첨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0. 7. 7

수 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제 목 : 2000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위의 보고서(안) 채택의 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발의
합니다.

첨부: 2000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시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1부. 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시민행정위원회위원장

2000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案)

1. 監査의 目的

-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9년도 결산(안), 다음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 효율적으로 행정의 집행상태를 감시 감독하여 구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監査期間 : 2000. 6. 25. ~ 7. 1(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동사무소(19개동), 시설관리공단

4. 監査實施經過

- 감사반의 구성
 - 위원장 : 이 헌 구
 - 간 사 : 안 재 흥
 - 감사위원 : 정 태 순, 천 상 욱, 유 찬 중, 박 종 식, 홍 기 서, 이 동 규, 김 정 대
- 감사보조직원
 - 전문위원 : 강 광 일
 - 직 원 : 의사담당주사 장 경 수, 8급 전 경 완
 - 속 기 사 : 별정8급 구 상 미, 정 은 희
- 감사장소 :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실 및 동사무소 감사장, 시설관리공단 감사장

5. 監査日程 및 場所

감 사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2000. 6. 25(일)	감사자료 수집 및 검토	시민행정위원회회의실	현장확인 등
2000. 6. 26(월)	각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	"
2000. 6. 27(화)	행 정 관 리 국	시민행정위원회회의실	"
2000. 6. 28(수)	생 활 복 지 국	시민행정위원회회의실	"
2000. 6. 29(목)	보 건 소, 감사담당관	시민행정위원회회의실	"
2000.6.30(금)13:00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
2000. 7. 1(토)	행정사무감사 결과분석회의	시민행정위원회회의실	"

6. 現地確認班 編成

반별	동 명	위 원 명	비 고
1	청운동, 효자동, 무악동	홍기서, 최강순	
2	부암동, 평창동	천상욱, 김복동	
3	삼청동, 가회동	정태순, 정병환	
4	교남동, 사직동	안재홍, 이형술	
5	종로1,2,3,4가동/5,6가동	이동규, 선상선	
6	명륜3가동, 혜화동	김정대, 김이환	
7	이화동, 창신 2동	유찬중, 현수한	
8	창신 3동, 승인 1동	박종식, 오금남	
9	창신 1동, 승인 2동	이헌구, 오필근	

7. 主要監査 實施內容

소관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비 고
감사담당관	민원응대, 전화문의, 민원처리 등에 따른 관계공무원들의 불친절과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대책	
감사담당관	'99~2000.현재까지 외부감사기관(시, 감사원, 기타)의 과별 항목별 구체적 수감내용 및 구체적 시정요구 내용, 이행내용	
감사담당관	'99~2000.현재까지 자체감사기본계획에 따른 과별 항목별 구체적 감사실적 및 조치사항	
감사담당관	자체 감찰계획 및 추진실적('99, 2000.현재까지): 공직기강 쇄신운동 추진계획 대 실적	
감사담당관	사안(민원)별 또는 30인이상 진정접수 및 사유별 현황: 직접조사, 이첩실적 등 민원처리실적, 민원심의위원회 및 민원대책회의 개최실적('99, 2000.5월까지)	
감사담당관	안전(환경)순찰대 운영(실적) 및 조직현황('99,2000.5월까지)	
감사담당관	시민불편사항 접수와 보수정비 내역('99,2000.5월까지)	
감사담당관	위험시설물 관리현황(2000.5월현재)	

소관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비고
총 무 과	'99~2000.5월까지 2회이상 보직이동 직원 명단	
총 무 과	한 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자 중 '99~2000.5월까지 보직이동이 없는 직원 명단	
총 무 과	구청사 제1별관 텍스타일 교체공사 집행내역	
총 무 과	구청사 냉·난방기 전수 교체공사 집행내역	
총 무 과	'99~2000.5월까지 관용차량 중 미운행 차량 현황	
총 무 과	통장인원수 대 회의수당 지급현황 및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99, 2000.5월까지)	
총 무 과	행정구역의 획정이 부적절하여 야기된 진정이나 민원, 그 처리내용(~현재까지)	
총 무 과, 기획예산과	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가 2000.1.12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본조례 제5조의 운영위원회가 현재까지 구성, 운영되지 않은 사유	
총 무 과	구민회관 준공까지의 연도별, 공사별 설계변경과 관련한 제반내용(설계변경사유 및 내용, 당초예산 및 설계변경 후 예산, 변경된 설계도면 및 시방서, 설계변경과 관련 회수조치된 관급자재의 종류 및 수량, 설계변경된 내용에 대한 감리보고서)	
총 무 과, 기획예산과, 건 축 과	구민회관 준공 후 주요하자내역: 누수, 하수처리불량 등 관련사진과 하자보수 요구 문서	
총 무 과	'99~2000.5월까지 효자동 사랑방 운영현황과 기념품판매점 수입금 내역 및 수익금지출액, 세외수입처리 관련자료 일체	
총 무 과	과별, 동별 직원(직급별) 현황(2000.5.31현재)	
총 무 과	각 동에서 근무하는 5급이하 전 직원 중 4년 이상 근무자 명단	
총 무 과	고용직, 임시직 및 상용직 현황과 주요 업무내용(각 과,동별):2000.5.31 현재	
총 무 과	통장현황과 교체현황('99, 2000.5.31현재)	
총 무 과	각 동 60세이상 통장 명단(2000.5.31현재)	
총 무 과	동사무소 행정차량 중 7년이상 된 차 현황(2000.5.31현재)	

소관부서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총무과	차량현황 및 정수대비 현재 보유대수(차종, 구입년도, 내구년수)	
총무과	명예동장, 명예구청장제도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총무과	명예퇴직자 직급별 현황 및 사유('99~2000.5.31현재)	
총무과	동별 인구현황 및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99, 2000.5.31현재)	
총무과	소규모사업 동별 배정 및 집행현황과 부가가치세 납부현황('99, 2000.5월 까지):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총무과	각 동별 민방위대 편성현황 및 제대운영(2000.5.31현재)	
총무과	민방위 교육시 주요 교육내용과 교육내용의 제도개선방안	
총무과	민방위교육,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부과내용 및 징수현황('99, 2000.5.31)	
총무과	2000.5월현재 반상회 건의사항의 종류별 분석내용과 내용별 처리결과	
기획예산과	'99, 2000.5월까지 지역신문 지원현황(종로신문, 종로저널)	
기획예산과	종로사랑지 2000년 예산집행 내역과 월별 발행부수 및 동별 배부내역 광고유치수입 혹은 유치방안	
기획예산과	현행조례 및 규칙중 개정, 제정, 폐지되지 않아 민원처리상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 규칙	
기획예산과	서울시 투융자자금 지방채 40억원에 대한 상환계획	
기획예산과	각종 기금별 예탁내용 및 이자발생 현황('99, 2000.5월까지)	
기획예산과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내용 및 집행실적('99, 2000.5.31현재)	
기획예산과	소송수행현황과 승패 및 패소사유 현황('99, 2000.5.31현재)	
시설관리공단	'99년도 시설관리공단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영업수익, 영업비용)	
시설관리공단	향후 운영계획 및 직제, 대관 및 시설관리계획	
시설관리공단	직원보수와 구청직원의 보수비교(각종 수당 포함)	
시설관리공단	직원 퇴직금 적립내역	
시설관리공단	정원 및 현원, 과건인원 현황(2000.5.31.현재)	

소관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비고
시설관리공단	각종 프로그램별 강좌수, 수강인원, 강사료 지급현황('99, 2000.5.31현재)	
민원봉사과	외국인등록현황 및 관련 제증명 발급현황('99, 2000.5월까지)	
민원봉사과	민원행정제도 개선사항 제안(직원,주민 구분) 현황과 처리결과('99, 2000.5월까지)	
민원봉사과	각 과별, 동별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2000.5.31현재)	
문화진흥과	각종 협의회 및 사회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보조금 지급실적('99, 2000.5월까지)	
문화진흥과	지방민속자료인 평창동 소재 산신각 및 여산신각의 복원계획	
문화진흥과	2000.5월까지 동별 새마을문고 월별 이용자 통계 및 도서의 대부실적 및 동문고에 대한 지원내역	
문화진흥과	사회체육단체보조금 지급현황('98, '99, 2000.5월까지)	
문화진흥과	사회체육진흥을 위한 생활체육단체 운영 지원내용	
문화진흥과	각 동 및 구운영 생활체육 취미교실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동별 강좌명, 참여자): '99, 2000.5월까지	
문화진흥과	각 동별 생활체육, 취미교실 개인별 강사료 지급내역('99, 2000.5월까지)	
문화진흥과	체육공원 및 관련시설 현황과 보수내역, 미보수내역 및 사유(2000.5.31현재)	
문화진흥과	컴퓨터 게임장업 현황 및 불법영업 처리실적, 과태료 징수현황	
문화진흥과	공연장 설치현황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한 명령 실적	
문화진흥과	공연장 행정처분 실적(허가취소, 영업정지, 기타 경고, 주의 등)	
문화진흥과	음반, 비디오판매, 대여업자의 등록 현황 및 취소, 영업정지, 경고, 과태료 부과징수내역	
문화진흥과	관광객, 외국인을 위한 최신 종로구 홍보자료 발간실적 및 소요예산 집행 실적 발간자료 책자 견본	
문화진흥과	우리 구 관광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및 문화지구지정을 위한 추진실적	
문화진흥과	임의보조금 지급현황('99.2000.5.31현재)	
문화진흥과	2000년 이후 종로 구립도서관 설립계획은 없는지?	

소관부서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문화진흥과	종로문화원 지원내역(강좌수, 수강자수):'99, 2000.5.31현재	
문화진흥과	문화재보수예산 집행내역(1억원 이상, 이하 구분)	
여권과	여권발급신청 접수현황 및 발급실적(신규, 재발급분):'99, 2000.5.31현재	
여권과	수입대비 경비출납 현황('99, 2000.5.31현재)	
여권과	'99, 2000.5.31현재 여권발급수수료 징수현황(건수/금액)	
여권과	여권발급과 관련한 국고지원현황('99, 2000.5.31현재)	
사회복지과	어린이날 원아격려금 집행내역('99, 2000)	
사회복지과	노인여가시설 보수 집행내역('99, 2000.5월까지)	
사회복지과	2000.5.31현재 보육시설현황 및 운영비지출내역, 행정지도감독 실적 및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배정 및 운영지도 감독실적 및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사회복지과	종로구 어린이집(구립, 사립)보조금 내역	
사회복지과	구립 어린이집 현황(건축일시, 아동수: 정원 대 현원)	
사회복지과	청운어린이집 의 63개소 보육시설의 소방계획서 배치여부 및 안전점검, 안전교육 실시현황	
사회복지과	청소년 이용시설관리 및 행정지도 실적('99. 2000.5.31현재)	
사회복지과	노래방기기 집행내역('99~2000.5.31까지)	
사회복지과	여성문화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99, 2000.5.31현재)	
사회복지과	소년소녀가장 동별 현황 및 지원실적('99, 2000.5.31현재)	
사회복지과	동별 구립 경로당 현황 및 월별 보조금 지급내역('99, 2000.5.31현재)	
사회복지과	동별 사설 경로당 현황과 보유인 및 보조금 지급현황('99, 2000.5.31현재)	
사회복지과	서울가정도우미 계획 및 채용, 복무활동비등 지급실적(월별/'99, 2000.5월 까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보조금 지급실적('99, 2000.5.31현재)	

소관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비고
사회복지과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결연실적('99,2000.5월까지)	
사회복지과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지도 감독실적('99, 2000.5월까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배정현황('99,2000.5월까지)	
사회복지과	동별 장애인 등록현황 및 지원실적('99,2000.5월까지)	
지역경제과	'99, 2000년 도시가스공급계획과 실적, 공급곤란지역의 공급대책 및 연도별 공급계획, 타구 현황	
지역경제과	도시가스공급제도개선을 위한 계획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동별 민원의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실적 및 도시가스기금 대출실적과 지원금총액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동별, 과별 동원인원과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99, 2000.5월까지)	
지역경제과	동별 정부양곡 회수 및 미회수 현황(2000.5.31현재)과 회수대책	
지역경제과	직업안내소 현황 및 지도감독(행정처분 포함)실적('99, 2000.5월까지)	
지역경제과	취업정보은행 취업알선 실적 및 현황('99, 2000.5월까지)	
환경위생과	폐수배출업소 현황,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단속내역('99, 2000.5월까지)	
환경위생과	염색업소 허가건수와 업소명 및 불법염색업소 오·폐수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99, 2000.5월까지)	
환경위생과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단속실적('99, 2000.5월까지)	
환경위생과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월별/'99, 2000.5월까지)	
환경위생과	2000년 환경개선대책 및 기본계획 수립내용	
환경위생과	환경개선 부담금 및 환경과태료 부과징수현황('99, 2000.5월까지)	
환경위생과	2000.5월현재 동별 전용주거지역내 요식업소(휴게,일반 등) 허가내용, 허가의 종류, 면적, 운영자, 판매음식물의 종류와 행정처분 내용	
환경위생과	대중목욕탕 위생점검 횟수 현황('99, 2000.5월까지)	
환경위생과	생활공해(소음,진동,먼지,악취)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실적(월별, '99,2000.5월까지)	

소관부서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환경위생과	유홍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행정처분 (과징금) 현황('99, 2000.5월까지)	
환경위생과	유해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99, 2000.5월까지)	
환경위생과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식품제조업, 위생관리용역업 현황 행정지도처분 실적('99, 2000.5월까지)	
환경위생과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무허가업소 단속 등) 실적('99, 2000.5월까지)	
환경위생과	유홍업소 불법영업 정지건수 및 행정조치 내역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따른 단속실적('99, 2000.5월까지)	
청소행정과	동별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 및 수입액 및 수입액 처리내용('99, 2000.5월까지)	
청소행정과	동별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부과 및 징수내역('99, 2000.5월까지)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 종류별 판매목표 대비 판매금액(실적):월별/'99, 2000.5월까지	
청소행정과	동별 청소장비 및 인력배치 현황 및 동별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실적('99, 2000.5월까지)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업소 및 발생량, 처리량 및 축산농가와 음식물쓰레기 공급계약내용	
청소행정과	동별 쓰레기적환장 현황 및 위치도, 쓰레기적환장 관련 민원내용('99, 2000.5월까지)	
청소행정과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쓰레기 실명제도의 도입대책	
청소행정과	관내 공중화장실 시설현황(수세식, 발효식 구분)	
청소행정과	관내 재래식 화장실 현황(개소)	
청소행정과	대중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청소행정과	쓰레기 대행업체명 동별 현황	
보건행정과	에이즈환자 현황 및 관리실태	
보건행정과	보건소 연간수입과 지출내역('99, 2000.5.31까지)	
보건행정과	동별 방역횟수 각 동 현황('99년도)	

소관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비고
보건행정과	'98, '99 종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대비 추진실적	
보건지도과	동별 독감 예방접종 현황('99, 2000.5월까지)	
보건지도과 의약과	'99~2000.5월까지 보건소예산 중 의료장비(체력단련시설포함) 및 주요 의약품(년구입액 500만원이상) 예산집행내역: 의료장비명, 규격, 제조회사, 가격, 용도/의약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등을 표로 작성	
의약과	병·의원, 약국 행정지도 감독 및 처분실적: 대상업소, 지도감독 횟수, 사유, 지도내용(시정요구, 고발, 영업정지) 등을 표로 작성('99, 2000.5월까지)	
의약과	보건소 주요 의약품의 구입(상위 10개품목)과 재고현황: 약품명, 정수, 보관량, 연간소요량, 월소요량, 사용기간 등을 표로 작성('99, 2000. 5.31까지)	

8. 監査結果 및 處理意見

가. 主要 是正·處理 要求事項

【행정관리국】

- 민방위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총무과)
- 각종 공사나 물품구입시 금액에 따라 규칙으로 전결권자를 정하고 있으나, 구청사 외벽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위반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는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람(총무과)
-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임에도 '99년도 예비비로 지방채 이자 2억원, 종로문화원 건물 개·보수비 3,600만원 등을 지출한 것은 예비비의 지출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예비비의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람(기획예산과)
- 구민회관 건립 후 주변이 매우 어두워져 주민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범지대화 될 우려도 있어 보안등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기획예산과)
-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중대한 대행사업의 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 심의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팔각정 재입찰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것은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 등 시정조치 바람(시설관리공단)

- 팔각정 당초 낙찰자인 남궁혜경은 수탁관리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게 하였음에도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
- 주민자치센터가 이미 설치된 동에도 취미교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동에 예산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하여 주기 바람(문화진흥과)
- 승인1동에 설치한 종로문화의 집 안내표지판이 도로변에 조잡하게 설치되어 제 구실을 못하고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문화진흥과)

【생활복지과】

-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비의 미수령자가 많음에도 수령을 독려한 근거가 없으므로 선의의 미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으로도 독려하기 바람(사회복지과)
- 독거노인에 대한 우유 배달은 매일 배달함으로써 신상에 이상이 없는지 유무를 파악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2~3일만에 한번씩 배달되는 사례가 많아 시행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하기 바람(사회복지과)
-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실적은 저조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생업소 단속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단속업무의 형평성과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선토록 할 것(환경위생과)
- 수질검사 의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최신 공문에 관인은 물론 관인생략 표기조차도 없는데 이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에 의문이 있으므로, 공문서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환경위생과)
- 쓰레기 적환장에서의 새벽시간대 작업으로 주민의 취침 방해는 물론, 악취 발생으로 주민불편이 크므로 작업시간대 조정과 주변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청소행정과)
-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동별로 차이가 많은데, 동별로 수집목표를 할당하는 등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청소행정과)

【보건소】

- 방역소독실적이 동별로 차이가 많은데, 전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형평에 맞게 방역소독을 실시할 것(보건행정과)

【감사담당관】

-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의사 결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점 및 팔각정의 최초 입찰과 낙찰 포기, 재입찰 과정 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재감사 실시 등 시정조치 바람

【동사무소】

- 3·1만세의 날 행사에 주민을 동원하면서 교통비로 3,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예산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승인 2동)
- 건물의 신축 및 멸실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은 먼저 신고후 처리를 하여야 하나, 처리 후에도 동에서 신고를 받았는 바 시정하기 바람(교남동)

나. 建議事項

【행정관리국】

- 통장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진 동이 있는 반면, 미진한 동도 상당수 있으므로 인구가 적은 통을 통·폐합한다든가 60세이상 고령통장 중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통장을 교체하는 등 통장에 대한 효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총무과, 승인 2동)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해 놓고 수령해 가지 않는 주민이 상당수 있어 동에서의 보관상 문제점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구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총무과)
- 각 동별로 소규모사업을 시행할 곳이 많이 있음에도, 상반기동안 사업시행이 거의 없어 동에 배정된 예산이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총무과)
- 보안등 1개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7만 4,100원이나, 보안등 1개를 연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설치비의 절반 수준인 약 3만 7,000원으로, 이는 2년마다 보안등을 새로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이며 구 전체적으로 보안등 수리비만 연간 1억 2,000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설치와 관리를 일원화하는 등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총무과)
- 우리 구의 옛 지명인 '쇠북 鐘'자의 사용이 구 자체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타 지역에서나 법적으로는 아직도 '술잔 鍾'자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정비 추진과 아울러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 우리 구 옛 지명 되찾기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기획예산과)
- 현재 구 예산으로 배부되는 대한매일신문의 배달사고가 약 15%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배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기획예산과)
- 2000년 6월 25일자 구청 홈페이지 여론광장에 구민생활관의 수영장의 질이 나쁘고 수영강사의 자질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시설 운영에 피해가 예상됨에도 반론 제시 등 사후 대처가 미흡하였는 바,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
- 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민회관 등의 시설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증액,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노후시설은 보수를 신속히 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의 프로그램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
-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친절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
- 문화재 주변의 건축허가시 문화재 암각심의 등 건축심의제도가 폐지되어 문화재 훼손이 많으므로 문화재 심의제도를 부활하여 주도록 서울시나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기 바라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 문화재 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문화진흥과)

- 자원봉사를 신청한 중·고등학생들에 대하여 쓰레기 줍기 등의 형식적인 자원봉사활동보다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요양원 등에 봉사하게 하는 등 자원봉사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문화진흥과)
- 문고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등에는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예산 배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문화진흥과)
- 낙원동 발전협의회에 낙원동 차 없는 거리조성 등을 위하여 임의보조금 3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대학로발전 추진위원회에도 지역활성화와 문화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해 주기 바람(문화진흥과)

【생활복지과】

-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설 경로당이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 그 수가 너무 많은 지역은 과감히 사설 경로당을 정비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기 바람(사회복지과)
-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천에 위치한 은혜·문혜 장애인 요양원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재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기 바람(사회복지과)
- 청소년문화센터 독서실을 24시간 개방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사회복지과)
-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쓰레기 줍기, 벽보 제거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지역경제과)
-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수요가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여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지역경제과)
- 저밀도 주거지역에도 도시가스 설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공급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람(지역경제과)
- 60세 이상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데 제약이 많아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지역경제과)
- 인사동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임에도 공중화장실이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변 화장실을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은 표지를 곳곳에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청소행정과)

【보건소】

-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 및 인체에 유해 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계속 실시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기 바람(보건행정과)
- 중부지역에도 보건분소를 설치하여 중부지역 주민도 보건진료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보건행정과)

【감사담당관】

- 상대방 있는 주민 진정이 접수되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진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상대방에게도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공원녹지분야 중 식목에 관한 감사를 철저히 하여, 식목 후 하자보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감사위원회 등 몇 년째 한번도 개최되지 않아 활동이 없는 위원회는 그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동사무소】

- 구민회관이 인접해 있는 동의 경우, 취미교실이 잘 운영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게 되므로 취미 교실 개설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창신1동, 송인2동)
- 적십자회비 징수율이 25%로 매우 저조하므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창신1동, 송인2동)
- 동사무소에서 4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순환 인사를 하기 바람(창신1동, 송인2동)
- 동사무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열심히 추진한 청운동 주호돈, 효자동 정완호, 무악동장 정철호, 부암동장 전락수, 평창동 신혜숙 표창 상신
- '9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동 직원들에게 점심식사(식당)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송인동 7-13 조정미(610707-2648820) 표창 상신

9. 200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752
----------	-----

제안일 : 2000. 7. 7.
제안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감 사 기 간 : 2000. 6. 25 ~ 7. 1(7일간)
- 감사대상기관 :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19개동),
- 감사반의편성 : 오 필 근의원 외 8인
- 감 사 장 소 :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실, 동사무소 감사장
- 주요감사실시내용
 - 소관별 주요시책 및 예산집행 현황(기간:'99년도 및 2000.5월까지)
 - 각종 민원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2000년도 5월까지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각종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 업무추진, 부동산중개업의 지도감독사항
 -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조합 등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 시민아파트 관리 및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업무 추진사항 및 옥외광고 관리사항
 -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 등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 건축허가·착공 및 준공검사 등 건축행정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
 - 보상업무 추진사항과 가로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
 - 주요 도로 및 하수사업과 수해,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대 조성 및 공원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동사무소 건축관련 민원처리 및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 등
- 감사실시경과
 - 시정·처리 요구사항 : 19 건
 - 건의사항 : 14 건

3. 보고서(안) : 별 .첨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0. 7. 7

수 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제 목 : 2000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위의 보고서(안) 채택의 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발의
합니다.

첨부: 2000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 1부. 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2000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案)

1. 監査의 目的

-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함으로써 구정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1999년도 결산(안), 다음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건의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기 위함임

2. 監査期間 : 2000. 6. 25. ~ 7. 1(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19개동),

4. 監査實施經過

- 감사반의 구성
 - 위원장 : 오 필 근
 - 간 사 : 최 강 순
 - 감사위원 : 선 상 선, 김 이 환, 김 복 동, 이 형 술, 정 병 환, 현 수 한, 오 금 남
- 감사 보조직원
 - 전문위원 : 장 소 수
 - 직 원 : 7급 김 경 량, 8급 엄 정 란
 - 속 기 사 : 별정8급 서 은 미, 별정9급 유 연 숙
- 감사장소 :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실, 동사무소 감사장

5. 監査日程 및 場所

감 사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2000. 6. 25(일)	감사자료 수집 및 검토	재무건설위원회회의실	현장확인 등
2000. 6. 26(월)	각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	"
2000. 6. 27(화)	재 무 국	재무건설위원회회의실	"
2000. 6. 28(수)	도 시 관 리 국	재무건설위원회회의실	"
2000. 6. 29(목)	건 설 교 통 국	재무건설위원회회의실	"
2000. 6. 30(금)	당면사항 관련회의 및 현장조사	재무건설위원회회의실	"
2000. 7. 1(토)	행정사무감사 결과분석회의	재무건설위원회회의실	"

6. 現地確認班 編成

반별	동 명	위 원 명	비 고
1	청운동, 효자동, 무악동	홍기서, 최강순	
2	부암동, 평창동	천상욱, 김복동	
3	삼청동, 가회동	정태순, 정병환	
4	교남동, 사직동	안재홍, 이형술	
5	종로1,2,3,4가동/5,6가동	이동규, 선상선	
6	명륜3가동, 혜화동	김정대, 김이환	
7	이화동, 창신 2동	유찬중, 현수한	
8	창신 3동, 승인 1동	박종식, 오금남	
9	창신 1동, 승인 2동	이현구, 오필근	

7. 主要監査 實施內容

소관부서	주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재 무 과	구기동 139번지일대 시유지 지번별 사용현황 및 미화계획, 향후관리 계획 부지매입과 부지활용 방안계획	
재 무 과	국·공유재산수입(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조정수납 현황('99, 2000.5월까지)	
재 무 과	2000.1~ 2000.5월까지 일반경쟁 입찰 및 낙찰현황[공사명, 사업기간, 낙찰회사명, 사업비(낙찰가), 설계변경 후 공사비, 설계변경사유(구사업 준공일자확인 별도서류복사, 사업비지출내역)]	
재 무 과	2000.1~ 2000.5월까지 수의계약 현황 및 사유(준공일확인서류, 계약 서류, 사업비 최종지불서류 별도제출)	
재 무 과	'99~ 2000.5월까지 구청 공사수주 건수 및 시공회사명	
재 무 과	회계별 예탁내용 및 이자발생 현황('99, 2000.5.31현재)	
재 무 과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및 자금운영계획(2000.5월까지)	
재 무 과	'99~ 2000. 5월까지 종로구 총사업비 10억이상 서울시비 및 지원사업 (교부금포함) 집행과정 및 절차(사업계약방식, 설계, 시공, 감리계약서, 응찰회사별(회사명, 회사소재지, 대표자, 주소, 연락처) 응찰가, 낙찰예정 가, 낙찰가, 설계, 시공 감리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당초계획서 및 추진결과 및 현재 상태 등)	

소관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비고
재무과	구유재산 현황 및 사용목적	
재무과	파출소통합 재산관리 현황	
재무과	각종 구정업무(행사 등 포함)의 홍보를 위하여 행한 광고사업일체의 계약자 인적사항, 계약방법, 금액('98, '99, 2000.5월까지)	
재무과	사무용품 구입비 내역('99, 2000.5월까지)	
세무1과	2000. 5월까지 전용주거지역내 근린생활시설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동별, 지번별 지방세별 지방세 부과내역 및 산출근거, 개정부과실적, 개정부과 사유, 위치도	
세무1과	'99년도 미납세금 및 결손처분 현황	
세무1과	각 동별 호화주택 호수 및 각종 지방세부과내역 및 징수내역('99, 2000. 5월까지)	
세무1과	세의수입, 지방세(세목별)체납액 현황 및 고액체납자 징수추진 현황	
세무1과	재산세부과 연도별 상승비율과 부과기준표, 타구와 비교	
세무1과	법인실사 및 추진내역	
세무1과	2000년도 세수증대방안과 체납징수를 위한 향후 계획	
세무1과	구세 목표 대 징수현황('99, 2000.5월까지)	
세무2과	세무관련 각종 민원의 종류별 접수현황('99, 2000.5월까지)	
세무2과	세금체납에 의한 허가등의 제한 및 취소요구 현황('99, 2000.5월까지)	
세무2과	지방세 감액처리 현황 및 사유('99, 2000.5월까지)	
지적과	부동산중개업 허가처리 현황('99, 2000.5월까지)	
지적과	부동산 중개업자 행정처분 현황 및 위반 단속실적('99, 2000.5월까지)	
지적과	측량으로 구유재산 신규발굴건수와 그 내역('99, 2000.5월까지)	
지적과	토지이동 처리현황('99, 2000.5월까지): 일반분할, 도시계획선분할, 종전 분할, 건축선지정분할, 등록전환, 신규등록, 등록사항정정 및 복구현황	

소관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비고
지 적 과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조정현황('99, 2000.현재까지)	
주 택 과	민영주택 사업계획승인 현황 및 사용승인 현황	
주 택 과	민영주택 가사용승인 현황 및 사유	
주 택 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서 발부 및 집행현황('99, 2000.5월 까지)	
주 택 과	'99, 2000.5월까지 동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건수, 금액, 징수액)과 이행강제금 미이행현황	
주 택 과	'99, 2000.5월까지 동별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단속, 고발건수	
주 택 과	'99, 2000.5월까지 우리 구 주택보급률, 전세 및 월세 가구수 현황, 전세 보증금 융자지원액 및 집행실적	
주 택 과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허가 처리내역('99~2000.5월까지)	
주 택 과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미준공 처리내역('99~2000.5월까지)	
주 택 과	신교동57번지 신축허가와 도로계획선 확정 및 보상시기와 보상내역	
주 택 과	'99, 2000년.5월까지 주택관련 감사원, 시, 구 감사지적사항	
주 택 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보상)현황 및 예산액('99, 2000.5월까지)	
주 택 과	시민아파트 보상 및 철거현황, 대책	
주 택 과	재건축재개발조합 추진현황 자료 및 감독상 행정지도 내역서	
주 택 과	항공촬영에 적출된 불법건축물 건수 및 처리내용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현황('99, 2000.5월까지)	
도시계획과	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부당 이득금 부과 징수현황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동별현황(공원, 학교, 여객주차장, 유치원에 한함)과 향후 구체적인 처리대책	
도시계획과	도심재개발 지역선정과 현재 추진현황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허가현황과 유형별 현황('99, 2000.5월까지)	

소관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비고
도시계획과	'99.9월 이후 토지형질변경행위와 관련한 자료 -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현지조사보고서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과정에 관한 기록, 의결내용에 관한 자료(찬,반 숫자 포함) - 허가지 인근의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에 관한 자료 - 허가지역의 원형보존 지구에 관한 내용과 현황 - 허가유보 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허가된 지역에 관한 자료 - 부결된 허가신청서 중 보완 후 허가된 곳에 관한 자료 - 1차 허가 후 그 뒤 면적이 증가되어 2차 허가된 지역에 관한 자료 - 반려사유를 사후에 이행하도록 조건부 허가된 자료 - 미준공지역에 관한 자료, 미준공지역중 재해발생 우려 지역 - 허가 후 공사중단된 곳의 현황과 그 사유 - 공사이행보증금에 관한 자료, 금액현황, 반환내역 등 - 허가신청의 유보 및 부결된 허가신청서에 관한 자료 -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회부되어 허가되었거나 부결된 것에 관한 자료 - 허가가능 지역이라도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향토적 가치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허가된 지역에 관한 자료 - 현재 시행 중인 도시계획법과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자치구의 의견서	
도시계획과	풍치지구(경관지구)동별현황(면적) 및 서울시 구별 풍치지구현황과 우리 구의 불합리한 풍치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계획	
도시계획과	불법 플래카드 게첨 단속현황('99, 2000.5월까지)	
도시계획과	돌출간판 정비단속(2000.3월중 실시한다고 했음)에 대한 결과	
건축과 주택과	장기미준공(미준공사유),미필 건축물현황 및 향후 처리방안(~현재까지 연도별)	
건축과	각 동별 건축물 증·개축 신고수리 내용('99, 2000.5월까지)	
건축과	건축시 도로점용료 징수현황('99, 2000.5월까지)	
건축과	건축허가 후 허가취소 고발 과태료 부과실적('99, 2000.5월까지)	
건축과	노후건물 및 위험시설물 관리현황('99, 2000.5월까지)	
건축과	건축관련 감사원, 시, 구 감사지적사항('99, 2000.5월까지)	
건축과	관내 중대형 건축물(연면적 2,000㎡이상)중 위반내역별(무단용도변경 등) 적발 및 조치사항	

소관부서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건축과	대수선허가 처리내역('99, 2000.5월까지)	
건축과	영선계 업무처리내역('99, 2000.5월까지)	
공원녹지과	녹지관리시설비 사업 집행내역('99, 2000.5월까지)	
공원녹지과	가로수 유지관리 현황('99, 2000.5월까지)	
공원녹지과	약제 예산집행 현황 및 방제실적('99, 2000.5월까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설계변경공사 현황('99, 2000.5월까지)	
공원녹지과	공원녹지시설 사용료 부과징수현황('99, 2000.5월까지)	
공원녹지과	수목정정작업 현황('99, 2000.5월까지)	
공원녹지과	시설하자보수 및 보식현황('99, 2000.5월까지)	
공원녹지과	그린벨트내 무허가건물, 시설물 단속현황('99, 2000.5월까지)	
공원녹지과	공익근무요원현황 및 단속실적('99, 2000.5월까지)	
공원녹지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린벨트내의 행위승인허가 현황('99, 2000.5월까지)	
공원녹지과	임야훼손 및 산림법 위반자 단속현황('99, 2000.5월까지)	
공원녹지과	약수터 수질관리 현황(무악약수터 개발대책 및 추진사항포함)	
공원녹지과	국비, 시비, 구비 예산 사업실적 현황('99, 2000.5월까지)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관리유지비 내역 및 투자금액('99, 2000.5월까지):수목, 병충해 약제 구매현황 포함	
공원녹지과	공원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내역	
공원녹지과	관내주택가 및 도로변 건물 위험수목 제거 현황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99, 2000.5월까지)	
공원녹지과	가로수 농약살포 현황('98, '99)	
공원녹지과	가로수 관리 및 복토 현황	
건설관리과	도로점용허가(신고포함) 및 무단점용 현황('99, 2000.5월까지)	
건설관리과	신발생 노점상 연도별 현황('98, '99, 2000.5월까지)	

소관부서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건설관리과	2000.5.31현재 도로가관점수 및 최초소유자와 현재소유자	
건설관리과	도로, 하천, 구거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99, 2000.5월까지)	
건설관리과	관내 간선도로에 설치한 한전승압기(TR)면적(m ²)과 관리대장, 수입현황	
건설관리과	공중전화 부스의 설치 및 수입금 실태 현황('99, 2000.5월까지)	
건설관리과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부과 허가건수 및 부과징수현황('99, 2000.5월까지)	
토 목 과	평창동 448번지 구거 오수방치상태에 대한 근본대책	
토 목 과	행자부 지방채 50억에 대한 집행내역, 도로개설 현황 및 관련 사진	
토 목 과	구기동 149-10 안쪽도로와의 접근불편 해소대책	
토 목 과	수질환경개선(평창, 구기천, 홍제천 포함)을 위한 기본대책	
토 목 과	'98년 염화칼슘 이월량, 99년 염화칼슘 반입량, 반출량, 반출처별 수불 내역, 잔고량과 잔고보관처 및 관련사진, 공공기관(타부처) 수불량	
토 목 과	통의동 7~108번지간 아스콘씌우기 포장공사 내역과 재포장 사유	
토 목 과	불량맨홀 정비공사 실적('99, 2000.5월까지)	
토 목 과	재해대책기금 운영현황('99, 2000.5월까지)	
토 목 과	'99, 2000.5.31현재 토목공사(도로개설, 확장)현황	
토 목 과	도로개설 중 미개설도로 현황	
토 목 과	도로개설공사와 설계변경 현황	
토 목 과	도로복구비 부과징수 및 굴착공사 내역(허가현황 : 원인자 + 관리청복구)('99, 2000.5월까지)	
토 목 과	시비지원 도로개설 및 도로예산 집행내역('99, 2000.5월까지)	
토 목 과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99, 2000.5월까지)	
토 목 과	각 동별 보안등 수리업체현황 및 수리건수('99, 2000.5월까지)	
토 목 과	관급자재 구입 및 수불현황('99, 2000.5월까지)	
토 목 과	각 동별 토목공사비 내역(편의사업)('99, 2000.5월까지)	

소관부서	주요감사실시내용	비고
토목과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내역('99, 2000.5월까지)	
토목과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 내역('99, 2000.5월까지)	
토목과	지하수 사용료 부과 내역 및 위반자조치 벌과금 부과내역	
교통행정과	주차장 부족에서 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일정규모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치 대책, 과다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합리적 운용대책	
교통행정과	지역현실을 의면한 주차장관련 법령의 개정대책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99, 2000.5월까지)	
교통행정과	관내 유형별 장애인차량 등록현황(2000.5월까지)	
교통행정과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 표시된 장애인 주차표시 면수 현황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추진실적	
교통행정과	노상주차장 건설사업비 집행내역(99, 2000.5월까지)	
교통행정과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 안내판 설치현황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현황(유형별): 등록차량, 등록세 미납현황('99, 2000.5월까지)	
교통행정과	반사경 설치 및 정비내역	
교통행정과	동별 규격별 과속방치턱 설치 및 철거현황	
교통지도과	주차장시설(동부, 중부, 서부지역별) 및 관리운영 현황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투자 및 금융예탁금 현황(2000.5월까지)	
교통지도과	건물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전용, 사용에 대한 단속, 점검실적(평창동, 무악동)	
교통지도과	운수사업에 대한 관계법령 위반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교통지도과	무단방치차량 회수현황 및 대책	
교통지도과	주정차위반 단속실적 및 범칙금 시효결손 처리현황('99, 2000.5월까지)	
교통지도과	주차단속원 운영현황(각 동별 단속인원, 단속건수)('99, 2000.5월까지)	

소관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비고
교통지도과	견인대행 실적내용('99, 2000.5월까지)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부과실적('99, 2000.5월까지)	
교통지도과	자동차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실적 및 과징금 부과현황('99, 2000.5월까지)	
교통지도과	과태료 과오납 및 단속스티커 오손,훼손 현황('99, 2000.5월까지)	
교통지도과	우리집 주차장갓기 사업비 보조금 내역	
교통지도과	자동차 정비업소현황(허가, 무허가 구분)	
교통지도과	이면도로(거주자)구획선과 수입현황('99, 2000.5월까지)	
교통지도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현황(위치, 구획수 등)	
교통지도과	유형별(노상, 노외)주차장 수입금액 현황('99, 2000.5월까지)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관리 및 입찰현황(위탁)	
교통지도과	방치차량 이전 및 폐차 현황('99, 2000.5월까지)	

8. 監査結果 및 處理意見

가. 主要 是正·處理 要求事項

【재무국】

- 구정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의 계약현황을 보면 '98년 이후 총 333건을 수의계약 처리하였고 또 대명기업, 대명회장 등 특정업체가 중점 계약한 사실이 있는 바, 특정업체 편중계약 사례도 시정할 은 물론 현수막을 통한 홍보정책도 재검토하기 바람(재무과)
- 각종 세외수입의 징수목표를 정함에 있어 과소책정이나 과다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밀한 현황 분석이나 예측을 통하여 적절한 목표가 설정되도록 할 것(세무1과)
- 지방세 과오납 원인의 50%이상 이 관계공무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착오 부과로 판단되는 바, 행정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검정단계를 강화할 것(세무1과)
- 과년도 체납세가 16만 6,000건에 440억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정의 차원에서 현장출장 징수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세무2과)

- 관내 도로개설 공사시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 등을 행함에 있어서 측량 결과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니, 지적측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할 것(지적과)

【도시관리국】

- 신교동 57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개선계획고시 이후에 계획도로 저층 부분에 증축허가를 잘못함으로써 보상을 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주택과)
- '99~2000년 무허가건물 단속 고발건수 등 감사자료가 총계건수와 맞지 않는 등 부실 작성된 사례가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제출하는 통계는 다른 자료의 기준일과 맞추어 일목요연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바람(주택과)
- 교남·무악, 경복궁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5억여 원을 투입하였으나 현재 구역지정을 취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으니 용역 의뢰시는 사후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용역을 시행하기 바람(도시계획과)
- 교동안전지대나 가로공지 등에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가뭄이 장기간 지속될 때에는 급수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종로거리(제일은행 구 전매청 앞 가각공지 등) 수목 등은 지난 5월 가뭄 때 이를 소홀히 하여 잔디나 수목 등이 고사된 사례가 있었는 바, 순찰을 정기적으로 하여 관리부실로 수목이 고사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공원녹지과)
- 약수터를 개발 또는 개축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질검사를 수회에 걸쳐 꾸준히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발함으로써 개발 후 수질악화로 폐쇄시키는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액에 대하여 매년 체납일소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체납액이 계속 누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건설관리과)
- 가로 가관점은 당초에 노점상의 체계적 정비와 생계지원용으로 타인 전매가 불가한 조건으로 허가되었으나 현재는 상당한 권리금에 내부적으로 전매가 횡행하는 이권사업화가 되었고, 도시미관 저해로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므로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종로거리의 과도한 인도점용 노점상에 대한 정비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기 바람(건설관리과)
- '99년도 건설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총 81건 중 3월에 9건, 4월에 23건, 5월 이후 49건으로 되어 있는 바, 우기대비 공사도 3월에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공사는 계약기간을 3월 이전에 체결하여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토목과)
- 제설용 염화칼슘은 장기 예보 등을 참고하여 적정 재고가 유지되도록 하고 관내 정부기관이나 경찰서에 염화칼슘을 지원할 때에는 공용도로 사용 용도로만 사용이 되도록 하고 경내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토목과)
- 동절기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포장품질이 불량하여 재포장하게 되는 바, '99년도에는 약 600평에 대하여 2,000여 만원을 투입, 재포장한 사례가 있으므로 동절기 포장공사는 가능한 한 지양하기 바람(토목과)

- 20m이상 간선도로변 일부 구간에 빗물받이가 노면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어 강우시 빗물이 노면에 고여있는 경우가 있으니 강우시 순찰을 통하여 이런 지역을 조속히 개량하기 바람(토목과)
- 장애인 표식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통행료, 가스사용 등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비대상자가 장애인 표식을 부착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있으니 장애인 차량 표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교통행정과)
- 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하수, 복지시설,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각종 공사는 주민에게 시혜적 행정임에도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투자에 상응하는 주민의 호응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구정의 홍보 차원에서 관내 공사 시행시에는 관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반드시 관할 구의원에 게 통보할 것(교통행정과)
- 일부 대형음식점 앞 교통안전지대 등 주차금지공간에 불법주차가 있을 때 당해업소와 관련여부에 따라 목인 또는 견인조치하는 등 주차단속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교통지도과)

나. 建議事項

【재 무 국】

- 구 세입예산을 자금 집행계획에 맞추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개월 내지 12개월 단위로 예치운영하고 있는 바, 3개월이상 예치자금의 이자는 월별수령을 지양하고 복리금리가 되도록 만기시에 일괄 수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재무과)
- 혜화동, 승인2동 청사부지 등은 서울시나 교육위원회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동청사의 구유화가 시급하므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나 우리 구 전체의 66.6%에 달하는 비과세지가 있는 어려운 점 등을 내세워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구입하거나 양여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재무과)
-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88. 4. 30. 시·구재산 분류방침에 따라 구유화 해야 할 재산이 다수 있는 바, 이의 구유화 작업이 미진하므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재무과)
- '99년부터 금년 5월까지 사무용품비로 2억 4천여 만원이 지출되었고 또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사무용품을 절약할 수 있는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련예산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재무과)
- 지방세의 납부를 인터넷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부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바람(세무1과)

【도시관리국】

-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개설도로에 저축되어 수용되고 잔여지가 발생할 경우 20㎡미만은 확대보상이 되나, 20㎡이상 잔여대지는 현황대로 존치토록 하고 있는 바, 20㎡내외의 잔여대지는 사실상 건축부지로서의 효용이 없으므로 확대보상 면적의 상향조정을 건의하기 바람(주택과)
-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제도가 연이율 3%로 융자해주는 복지적 시혜정책임에도 이용률이 극히 부진한데 이는 홍보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주택과)

- '99~2000. 5월까지의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은 총 7억 1,0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2억 6,800만원으로 극히 부진한 바, 징수를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주택과)
- 시민아파트를 철거함에 있어 보상금 수령 후에는 즉시 이주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보상금만 수령하고 철거 마지막까지 거주하여 보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니 보상 후 즉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주택과)
- 평창동 285번지선에 30여 년 전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광장이 있었으나 이후 주변 광장과 관련된 도로 등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본 시설만 남아있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도시계획 결정이 되도록 할 것(도시계획과)
- 종묘공원의 야간 이용상태가 극히 불량하니 공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 하천부지나 도로부지간의 점용료율이 상이하여 점유주인으로 하여금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관계규정을 검토하기 바람(건설관리과)
-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확보하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주차효율을 고려하여 대상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30평, 50평정도의 소규모 필지를 구입함으로써 투입예산에 비해 주차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주차장 확보 대상부지의 취득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에 의거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교통행정과)
- 불법주정차의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등기압류하고 있으나 노후된 차량으로 계속 체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경우는 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바람(교통지도과)